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80호

2026년도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후보 모집 공고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기술자립화와 기업 간 강력한 협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후보 발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 협력모델 개요

○ 소부장 분야에서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간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 추진 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GVC(Global Value Chain) 산업구조 안정화**

□ 추진 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49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산업부 고시)

* 상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에 따름

□ 지원 분야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산업부 고시*), 경제안보 관련 품목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관련 분야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지원 대상 및 규모

○ **(대 상)** 국내에 생산역량을 갖춘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 내 수요기업 참여 필수

* 수요기업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의미

○ **(규 모) 연간 5개 컨소시엄 내외** (변동 가능)

* 접수된 제안서는 분기별 "실무전문그룹(민간 전문가)의 기술·경제성 검토 → 실무추진단(산업부)의 정책적 검토"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상정 여부 최종 결정

□ 협력모델 유형

❶ 일반형 협력모델 :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수요기업 간 협력 등

* 국내 공급기업-해외 수요기업 간 협력 포함

↳ 인정 범위 : ❶해외에 소재한 해외법인 ❷해외에 소재한 국내법인 ❸국내에 소재한 해외법인

< 협력 예시 >

수직적 협력	▸ **(협동 연구개발)** 핵심품목 개발을 위한 수요기업 기술 로드맵 공유, 공동 R&D 등 ▸ **(공급망 연계)**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공동Fab) 또는 연구시설
수평적 협력	▸ **(공동 투자)**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개발·시설 투자 ▸ **(공동 재고확보)** 해외 공급처 발굴 및 공동구매, 공동 물류 및 저장 등을 통한 재고 확보

❷ 신규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 : 앵커 수요기업 중심 대형 협력

○ **(개 요)** 시장 채택 시, 전후방 소부장 전반의 기술 혁신을 유발하는 품목(게임체인저 품목)의 **최종 수요기업**이 기술 지도, 구매 확약 등을 통해 중소·중견 공급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설계하고 혁신**하는 **대형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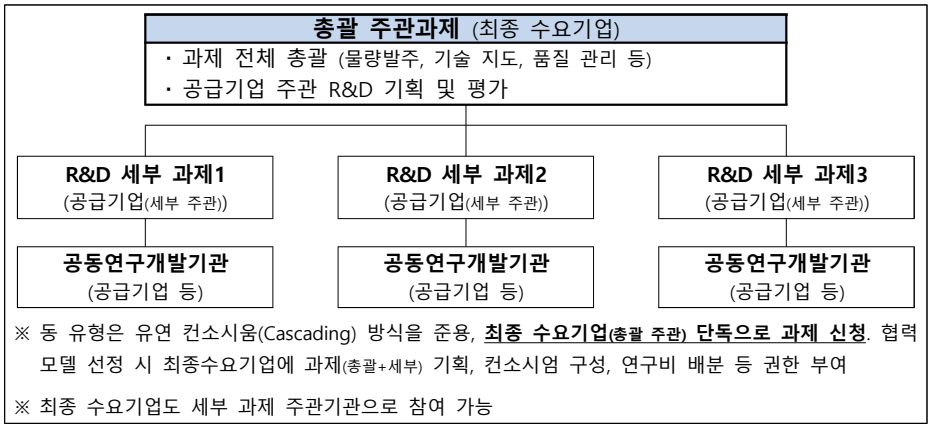
- **(방 식) 최종 수요기업(총괄 주관) 단독으로 신청** 후,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선정 시 최종 수요기업이 **△과제 세부기획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등 권한을 갖고 R&D 수행**

* 현 R&D 제도 내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방식 활용(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55호)

< 일반 협력모델과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 비교>

구 분	일반 협력모델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
기획 주체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최종 수요 기업
선정 기준	기술적 성공 가능성 중심	실제 양산 가능성 중심
참여 요건	수요기업 참여(실증 등) 의향	최종 수요기업 실증 및 구매 확약
참여 방식	공급기관 주관	최종 수요기업이 총괄 주관
지원 과제	1개 내외 품목 개발	필요 품목(2개 이상 가능) 개발
지원 금액	연간 40억 내외	연간 최대 60억 내외
추가 권한	-	연구개발기관 자율 선정, 연구비 자율 배분 등

< 생태계형 협력모델 추진체계(예시) >



※ 동 유형은 유연 컨소시움(Cascading) 방식을 준용, **최종 수요기업(총괄 주관) 단독으로 과제 신청**. 협력 모델 선정 시 최종수요기업에 과제(총괄+세부) 기획,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등 권한 부여

※ 최종 수요기업도 세부 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❸ 신규지역주도형 협력모델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지역 내 (2)지역 간 협력 지원

(1) **(단일 지역형)**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 **소부장 기업*이 공장 신설 및 증축**** 시 **지역이 지원 패키지를** 확약***하고, 중앙이 **R&D 및 정책금융 등을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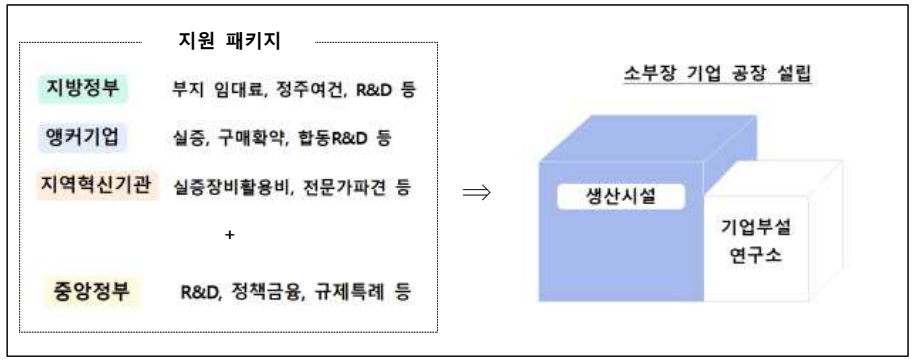
* (기업정의) 소부장 특화단지와 투자 관련 MOU를 체결한 앵커기업 및 협력 기업
**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 필수 설립
*** (확약방식) 지역 內 앵커기업 및 협력기업, 지역 혁신기관(TP)의 매칭 금액을 지자체가 확약

※ 지자체 지원은 별도 전용 지원 프로그램 신설 혹은 기존 프로그램 내 특례조항 등 신설 필요

- R&D 자금 30% 이상을 지역투자액(현물, 현금)으로 필수 매칭

* (지역투자액 구성) R&D 外 연구장비활용비, 부지·건축 임대료, 정주여건 등 현금, 현물 매칭 가능
** (매칭방식) 지역이 지원 패키지 마련 후 R&D 요청 금액 제시(R&D 신청 금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예상액(국비+지방비)의 최대 2배까지 신청 가능, 최대 신청금액 = 200억원(총괄+세부, 총사업비기준))

< 지역주도형 협력모델(단일 지역형)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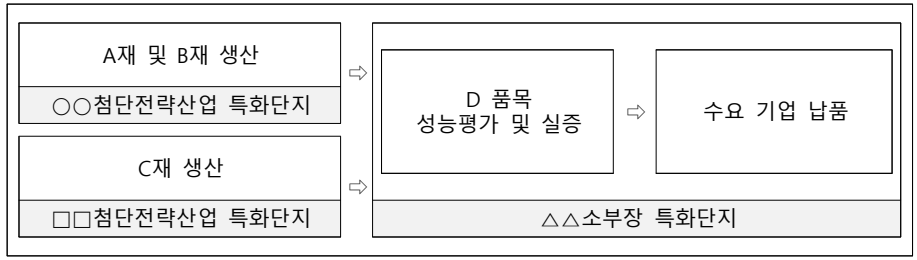


(2) **(지역 간 협력형) 특화단지 간* 다수의 앵커, 협력기업****이 협력을 통해 **신규 품목*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광역 기술개발 협력 지원**

* 2개 이상 특화단지(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한정), 1개 이상 앵커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기업정의) 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와 투자 관련 MOU를 체결한 앵커기업 및 협력 기업
*** 신규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로서 기존 품목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지역 간 협력형의 경우, **소부장 특화단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이 신청 가능**(단, 소부장 특화단지(앵커기업) 참여 필수)**

<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지역 간 협력형) 협력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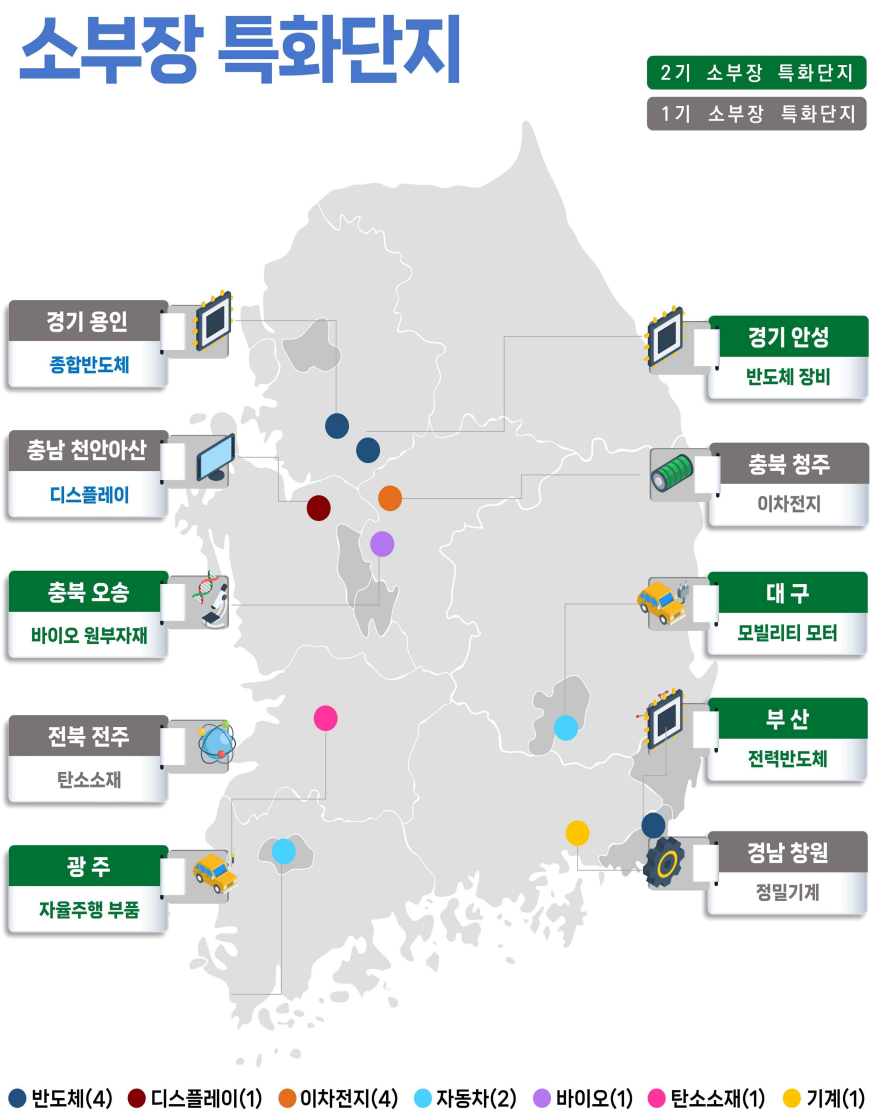
□ 지원 내용 (붙임1 참조)

○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에 대해 **범부처 합동 패키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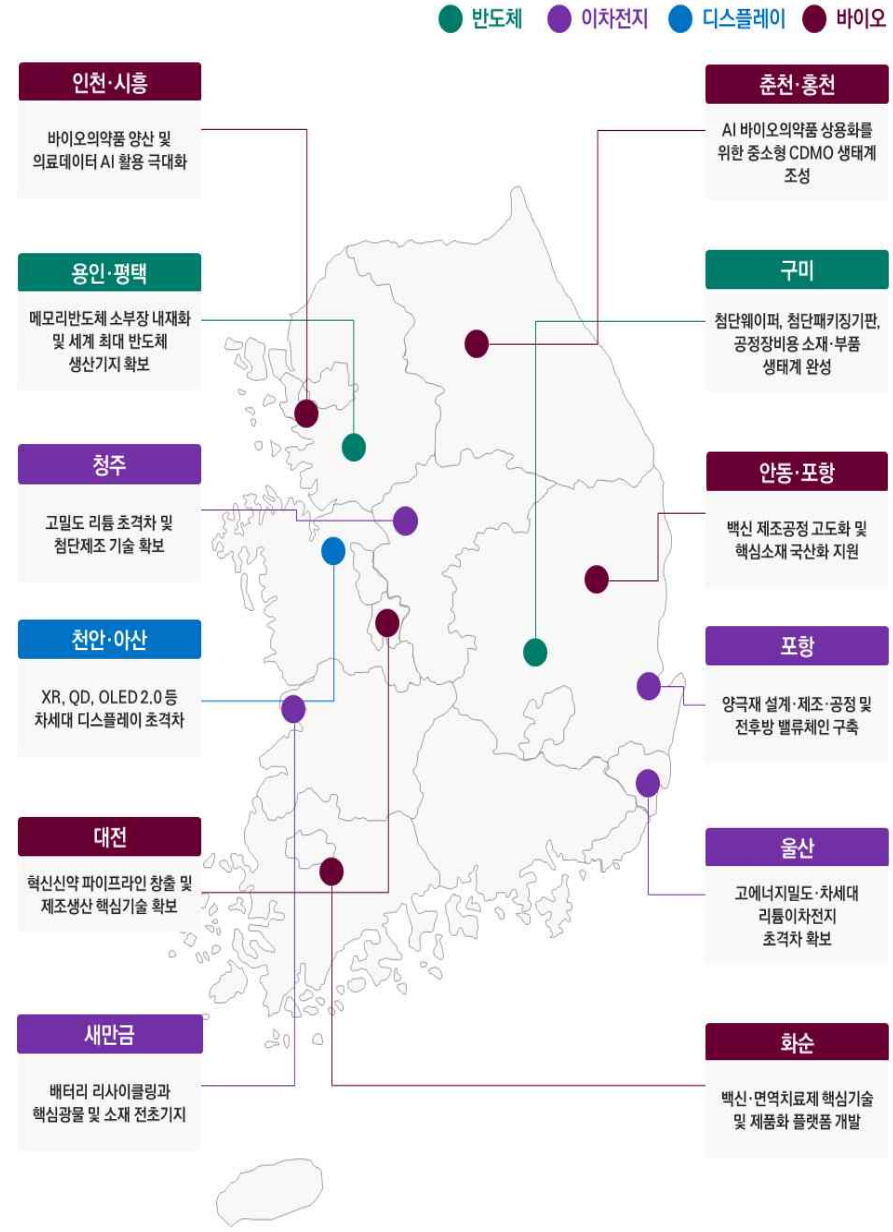
- **(기 술)** 공동 **R&D**, 공동 **인프라**(테스트베드 등),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을 위한 투자, 양산성능평가, 시험제품 제작 지원 등 **사업화 지원**
- **(규제특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기간 단축, 주 52시간 제도 완화 적용(특별연장근로인가) 등 **규제 특례**
- **(세제·금융)** 정책금융, 시설투자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 M&A 지원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한함

참고1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현황



참고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현황



2 신청 방법 등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6.4.9

* 사전 검토, 실무전문그룹·실무추진단 심의, 결과통보 등의 일정·시기는 **경쟁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공고 연장 가능함**

○ **(신청 방법)** 소부장넷 홈페이지(www.sobujang.net) 온라인 접수

* 소부장넷 홈페이지 → 소부장 기업·기술 → 협력모델 신청 →' 26년 협력모델 후보 모집 공고

○ **(제출 서류)** 소부장넷 또는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비고
1	(필수)협력모델 경쟁력 강화 신청서	첨부1
2	(필수)협력모델 경쟁력 강화 세부 계획서 ↳(해당시)데이터 공유 및 AI 협력 계획서	첨부2
3	(필수)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	(필수)과거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5	(필수)사업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동의 및 청렴서약서	첨부3
6	(필수)대표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7	(필수)협력모델 참여의사 확인서(대표직인 必)	첨부4
8	(해당시)(해외)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첨부5
9	(필수)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대표직인 必)	첨부6
10	협력모델 경쟁력 강화 고도화 계획서(경쟁위 상정시 제출)	
11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경쟁위 상정시 제출)	
12	비공개 과제 보안서약서(경쟁위 상정시 제출)	
13	비공개 과제 신청서(경쟁위 상정시 제출)	
14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경쟁위 상정시 제출)	
15	1)앵커품목정의서, 2)기업간상호협력의향서, 3)생태계경쟁력확보계획서	생태계완성형 해당시
16	1)앵커기업협력확약서, 2)지방비매칭확약서, 3)신규공장투자의향서	(지역주도형)단일지역형 해당시
17	(제출)신규공장투자의향서 → (향후)신규공장설립확약서(경쟁위 상정시 제출)	

※ **8번 :** 해외수요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로 참여하는 협력모델(글로벌 협력모델)에 한하여 제출하며, 신청단계에서 'MOU(양해각서), LOI(구매의향서)'로 갈음 가능함.

10~14번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상정 대상으로 선정 시 제출

15~16번 : 신설된 협력모델 유형으로 **1)생태계완성형 및 2)지역주도형(단일지역형)에 신청 시 필수 추가 제출**

※ 지역주도형단일지역형에서 앵커기업이 공장을 신설 및 증축 투자하는 경우, 앵커기업협력확약서 제출 불필요

※ 데이터 공유형 내용포함 : **(해당시)**경쟁력 강화계획서 內, **'데이터 공유 및 AI 협력 계획'** 내용 작성 후 제출

□ 신청 자격

○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내 수요-공급기업 간 수평적 또는 수직적 협력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한 **산·학·연 컨소시엄**

□ 신청 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 신청기관 중 **대표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관은 **기업으로 제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국외기관"으로 참여 가능

- **협력모델 후보 신청기관**은 향후 선정시 **주관기관으로 R&D 필수 수행**하여야 함

□ 심의 제외 대상

○ **신청(주관/참여)기관,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가 실무전문그룹 심의 시점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실무전문그룹 심의 시점에 **신청(주관/참여)기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및 **총괄책임자**가 **불임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안된 협력모델 내 **수요기업**이 **없거나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 수요기업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공고마감일까지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대표직인 必)를 제출하지 않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모델이 협력모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상기 요건에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굴심의에서 제외하며, 심의 이후 협력모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 취소함**

3 검토 및 발굴절차

□ 검토 항목

검토 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충실성 · 연구책임자 및 조직 역량 · 기술의 선점성 (선도가능성 등) 및 파급효과 ·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요건
경제성 및 사업성	· 사업화 투자 전략 · 수요기업의 적정성 및 개발품목 적용 계획 · 시장진입 및 독과점 가능성 · 시장규모 및 성장성 · 고용창출 및 상생협력 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협력체계 타당성	· 기업 간 협력체계의 적정성 · 협력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 협력 모델과 기존 지원항목과의 중복성 · 협력체계의 산업 내 파급효과
비공개 여부	· 품목에 대한 대외비 및 전략적 관리 필요성 · 수요기업 기술전략 보호 등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 추진 일정

구분	세부내용	시기
모집 공고	▸ 산업통상부, 소부장넷 홈페이지	'26.2.3~
⇩		
신청・접수	▸ 산업기술R&D정보포털, 소부장넷 홈페이지	~'26.4.9
⇩		
실무전문그룹 심의(서면심의)	▸ 협력모델유형, 기술성, 경제성, 중복성 종합 검토(KEIT) * 신청유형, 필수 제출서류, 신청기업 재무등 기본요건 검토	~'26.5월
⇩		
후보모델 설명회	▸ 협력모델 후보 설명회 진행 (산업부, KEIT) * '사전지원제외' 대상 外 모든 후보 협력모델 관련 설명회 개최	~'26.5월
⇩		
실무추진단 심의	▸ 정책성, 전략성, 시급성등 심층· 종합심의 실시 (산업부)	~'26.6월
⇩		
협력모델 안건 고도화	▸ 경쟁력강화계획 및 요청사항 구체화 (신청기업) ▸ 수요기업 확약서등 추가 필요서류 제출	~'26.6월
⇩		
소재·부품·장비 전문委	▸ 협력모델 파급효과·시급성·수행기관 역량 등 검토	'26년 하반기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委	▸ 협력모델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26년 하반기
⇩		
후보 선정 결과 통보	▸ 소부장 경쟁력강화委 상정대상 결과 개별통보(KEIT)	-
⇩		
후속 조치	▸ 협력모델 요청사항에 대한 범부처 패키지 지원	-

※ 사전 검토, 실무전문그룹·실무추진단 심의, 결과통보 등의 일정·시기는 **경쟁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마감이후 상황에 따라 공고연장을 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협력모델 경쟁력 강화 세부 계획서(첨부2)'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신청기업은 **주관부처**(산업통상부) 및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심의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 절차*는 없으며**, 기존 제출건과 **수정사항 없이 재신청한 사항**은 **별도의 검토절차 없이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 협력모델 발굴에 대한 심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제도로서 심의 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 절차는 없으며, 검토 결과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상정 대상**이 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미제출한 경우 상정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 지원 내용 등 협력모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동 공고는 협약 당시 유효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징수 및 관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협력모델 발굴 및 선정에 대한 규정은 '소부장특별법, 소부장법 시행령, 협력모델 운영규정 및 산업기술공통운영요령등'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함**

○ 신규 추가된 유형 中 **'지역주도형 협력모델(단일지역형)'**의 경우엔 경쟁력고도화시(경쟁위상정전) **'신규공장설립확약서'**를 필수적으로 추가 제출해야함

6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협력모델 후보 신청서 작성 및 전산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08

붙임1 협력모델 지원 세부내용

구 분	지원 사항		지원 내용
기술개발	R&D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산업부 등)	▸ 협력모델 공동기술개발 목표 및 세부 연구내용 달성을 위한 R&D 자금 지원 * 개발목표 및 연구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됨
	R&D 연계지원	양산성능평가사업 등 (산업부 등)	▸ 양산성능평가 우대지원
정책금융/세제지원	정책금융	장기거치 및 저금리 정책금융 (금융위)	▸ 장기거치 저금리 정책금융 지원
	세액공제	시설투자 법인세 세액공제 (재경부)	▸ 시설투자 법인세 세액공제 지원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시
	M&A	해외 M&A 지원 (재경부)	▸ 조특법 관련 규정을 통한 세액공제 적용
인력/인프라	인력	병역특례 우대 배정 (병무청)	▸ 협력모델 승인기업 우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과기부)	▸ 협력모델 승인기업 우대
	인프라	소부장 특화단지 우선입주 (지자체, 산업부)	▸ 제조시설 설치비 및 설치부지 지원
규제특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기후부)		▸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주52시간 시행시기, 대상 및 범위 유예 검토 (고용부)		▸ 특별연장근로 인가
	공정안전보고서(PSM) 승인심사 기간 단축 (고용부)		▸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기술특례 상장 지원 (금융위)		▸ 심사기간 단축, 기술평가 완화(코스닥)
	청년의무 고용제도 적용 완화 (산업부)		▸ 정부출연금에 따른 청년의무고용 제도 완화

※ 지원 필요사항 요청 시, 관계부처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상기 지원 세부 내용은 지원기관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협력모델 지원 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기관이 협력모델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단,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동 사업은 소재부품기술개발(패키지형)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실무전문그룹심의"에 상정하지 아니함